

- 2016회계연도 -
결산검사 의견서



목 차

| | |
|------------------|----|
| I . 결산검사 경과 | 5 |
| II . 결산현황 | 9 |
| 1. 연수구의 재정의 개황 | 11 |
| 2. 세입세출 결산 | 12 |
| 3. 재무제표 | 20 |
| 4. 성과보고서 | 22 |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23 |
| III . 결산 검사결과 의견 | 27 |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2017년 4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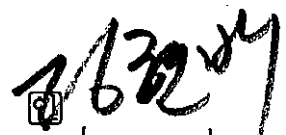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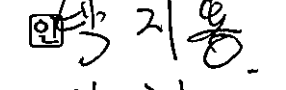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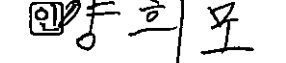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3월 31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 검사 위원

| | | |
|------|-------|---|
| 대표위원 | 정 현 배 |  |
| 위 원 | 김 화 일 |  |
| 위 원 | 김 유 태 |  |
| 위 원 | 박 지 용 |  |
| 위 원 | 양 희 모 |  |

I .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7. 3. 31 ~ 4. 19 (20일간)

2. 검사장소 : 연수구청 결산검사장 (3층 대상항실)

3. 주요 검사내용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4. 검사위원

- | | | |
|--------|----------------|-------|
| ○ 대표위원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 정 현 배 |
| ○ 위 원 | 백석세무회계사무소 | 김 화 일 |
| ○ 위 원 | 세무사사무소 | 김 유 택 |
| ○ 위 원 | 우리회계법인 | 박 지 용 |
| ○ 위 원 | 이촌플러스세무법인 인천지점 | 양 희 모 |

5.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Ⅱ. 결산검사 현황

1. 연수구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세입(A) | | 309,955 | 328,717 | 364,853 | 409,026 | 505,591 |
| 세출(B) | | 259,825 | 280,960 | 303,739 | 304,686 | 351,573 |
| 잉여금 (A-B) | 소 계 | 50,130 | 47,757 | 61,114 | 104,340 | 154,018 |
| | 이 월 금 | 23,544 | 16,403 | 10,082 | 25,502 | 26,287 |
| | 보 조 금 집행잔액 | 3,238 | 2,860 | 2,247 | 2,914 | 4,830 |
| | 순 잉 여 금 | 23,349 | 28,494 | 48,784 | 75,924 | 122,901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재정상태 | | | 재정운영 | | | 비고 |
|-------|-----------|--------|-----------|---------|---------|---------|----|
| |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총수익 | 총비용 | 운영차액 | |
| 2016년 | 1,167,464 | 10,764 | 1,156,700 | 397,939 | 338,794 | -59,145 | |
| 2015년 | 1,103,565 | 8,477 | 1,095,088 | 346,940 | 302,145 | -44,795 | |
| 증감 | 63,899 | 2,287 | 61,612 | 50,999 | 36,649 | -14,350 | |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61,612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63%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4,350백만원(32%) 증가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채무는 현재 없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
| 계 | 482,400,984 | 505,591,430 | 351,573,433 | 154,017,997 |
| 일반회계 | 447,996,889 | 465,508,687 | 348,828,537 | 116,680,150 |
| 특별회계 | 34,404,095 | 40,082,743 | 2,744,896 | 37,337,847 |

| 구분 | 현년도 채무상환 | 이월액 | | | | |
|------|-------------|-----------|---------|------------|-------------|-------------|
| | | 명시 | 사고 | 계속비 | 보조금 집행잔액 | 순세계 잉여금 |
| 합계 | - | 4,670,346 | 343,191 | 21,273,868 | 4,829,647 | 122,900,945 |
| 일반회계 | - | 3,367,491 | - | 16,153,839 | 4,816,233 | 92,342,586 |
| 특별회계 | - | 1,302,855 | 343,191 | 5,120,029 | 13,414 | 30,558,359 |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액 456,722,433,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25,678,540,9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82,400,983,950원,

세입결산액은 505,591,429,781원,

세출결산액은 351,573,432,723원으로

그 차인 잔액 154,017,997,058원이 발생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 26,287,405,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29,646,522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122,900,945,106원이 발생하여
각각 회계항목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22,900,945천원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1) 세 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 구 분 | 예 산 현 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결손처분 | 다음연도이월액 |
|-------|-------------|-------------|-------------|-----------|------------|
| 결산액 | 447,996,889 | 491,272,689 | 465,508,687 | 1,004,268 | 24,759,734 |
| 결산확인액 | 447,996,889 | 491,272,689 | 465,508,687 | 1,004,268 | 24,759,734 |
| 차액 | - | - | - | - | - |

수납액 465,508,687천원은 예산현액의 104%로서 17,512천원이 초과수납되었다.
이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 수납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465,508,687 | 465,508,687 | - |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천원)

| 연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예산대비징수결정액 | 징수결정대비수납액 | 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액 |
|------|-------------|-------------|-------------|-----------|-----------|-----------|-------------|
| 2016 | 422,338,918 | 491,272,689 | 465,508,687 | 1,004,268 | 116% | 95% | 0.2% |
| 2015 | 363,919,005 | 414,265,786 | 390,596,287 | 623,418 | 114% | 94% | 0.15% |
| 증감 | 58,419,913 | 77,006,903 | 74,912,400 | 380,850 | - | - | - |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74,912,400천원이 많은 465,508,687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380,850천원이 많은 1,004,268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352,396천원, 시효소멸 667,087천원 등이다.

< 세목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 | 다음연도이월액 | |
|--------------|-------------|-------------|-------------|------------|------------|------------|
| 합계 | 447,996,889 | 491,272,689 | 465,508,687 | 1,004,268 | 24,759,734 | |
| 지방세 | 106,520,000 | 118,907,916 | 111,048,008 | 369,087 | 7,490,820 | |
| 세외수입 | 소계 | 29,254,459 | 50,707,951 | 32,803,857 | 635,181 | 17,268,914 |
| | 경상적세외수입 | 24,308,855 | 24,610,546 | 24,550,358 | - | 60,188 |
| | 임시적세외수입 | 4,945,604 | 4,945,604 | 8,253,499 | 635,181 | 17,208,726 |
| 지방교부세 | 4,585,000 | 7,137,928 | 7,137,928 | - | - | |
| 조정교부금 등 | 30,257,381 | 38,305,572 | 38,305,572 | - | - | |
| 보조금 | 185,342,475 | 185,296,776 | 185,296,776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92,037,574 | 90,916,546 | 90,916,546 | - |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4%인 111,048,008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2,803,857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7,137,928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38,305,572천원, 보조금은 185,296,776천원이 수납되었다.

(2) 세 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결산액 | 422,338,918 | 447,996,889 | 348,828,537 | 19,521,331 | 79,647,021 |
| 결산확인액 | 422,338,918 | 447,996,889 | 348,828,537 | 19,521,331 | 79,647,021 |
| 차액 | - | - | - | - | - |

예산액은 422,338,918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5,657,971천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현액은 447,996,889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3,000천원이며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행사운영비의 일부를 “보훈의 달 맞이 위인행사” 초청 대상자 식비 지출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사무분장 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35,732,129천원이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 지출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348,828,537 | 348,828,537 | -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 지출액 | 2016회계연도 | | | 전년대비 증감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율 | 금액 | 비율 |
| 합 계 | 299,679,741 | 447,996,889 | 348,828,537 | 78 | 49,148,796 | 16.4 |
| 일반공공행정 | 20,877,274 | 36,818,756 | 26,901,085 | 73 | 6,023,811 | 29 |
| 공공질서및안전 | 1,441,882 | 2,120,144 | 1,966,155 | 93 | 524,273 | 36 |
| 교육 | 6,639,801 | 9,204,022 | 9,110,875 | 99 | 2,471,074 | 37 |
| 문화 및 관광 | 5,728,092 | 20,517,060 | 12,708,924 | 62 | 6,980,832 | 122 |
| 환경 보호 | 7,823,182 | 18,322,238 | 16,307,968 | 89 | 8,484,786 | 108 |
| 사회 복지 | 181,240,906 | 197,849,879 | 192,091,700 | 97 | 10,850,794 | 6 |
| 보건 | 10,086,317 | 12,119,587 | 11,744,518 | 97 | 1,658,201 | 16 |
| 농림해양수산 | 1,271,623 | 1,888,264 | 1,742,046 | 92 | 470,423 | 37 |
| 산업·중소기업 | 404,745 | 321,913 | 309,844 | 96 | -94,901 | -23 |
| 수송 및 교통 | 5,432,087 | 10,358,490 | 9,017,856 | 87 | 3,585,769 | 66 |
| 국토및지역개발 | 7,274,769 | 18,310,131 | 13,865,210 | 76 | 6,590,441 | 91 |
| 예 비 비 | - | 65,592,133 | - | - | - | - |
| 기 타 | 51,459,063 | 54,574,272 | 53,062,356 | 97 | 1,603,293 | 3 |

2016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192,091,700천원, 기타 53,062,356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192,091,700천원 가장 증가폭이 큰 부분은 문화 및 관광부분으로 전년대비 122%가 증가하였다.

3) 특 별 회 계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계 | 34,404,095 | 45,113,539 | 40,082,743 | - | - |
| 의료급여기금 | 476,360 | 499,237 | 499,237 | -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727,928 | 732,521 | 732,521 | - | -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 14,181,000 | 19,503,728 | 19,503,728 | -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1,765,891 | 1,765,890 | 1,765,890 | - | - |
| 기반시설 | 611,449 | 611,449 | 611,449 | - | - |
| 지하수 | 39,712 | 43,023 | 40,765 | - | - |
| 주차장 | 16,601,755 | 21,957,691 | 16,929,153 | - | - |
| 결산확인액 | 34,404,095 | 45,113,539 | 40,082,743 | - | - |
| 차액 | - | - | - | - | - |

수납액 40,082,743천원은 예산현액의 117%로서 5,678,648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89%를 보이고 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은 일치했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 수납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40,082,743 | 40,082,743 |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2) 세 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계 | 34,383,525 | 34,404,095 | 2,744,896 | 6,766,075 | 24,893,125 |
| 의료급여기금 | 476,360 | 476,360 | 467,444 | - | 8,916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707,358 | 727,928 | 369,278 | - | 358,650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 14,181,000 | 14,181,000 | 179,971 | 5,120,029 | 8,881,000 |
|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 1,765,891 | 1,765,891 | - | - | 1,765,891 |
| 기반시설 | 611,449 | 611,449 | 164,389 | - | 447,060 |
| 지하수 | 39,712 | 39,712 | 19,366 | - | 20,346 |
| 주차장 | 16,601,755 | 16,601,755 | 1,544,447 | 1,646,046 | 13,411,262 |
| 결산확인액 | 34,383,525 | 34,404,095 | 2,744,896 | 6,766,075 | 24,893,125 |
| 차액 | - | - | - | - | - |

예산액은 34,383,525천원이었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현액은 34,404,09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인 2,744,896천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로 인한 것이다.

이월액 6,766,075천원은 노인복지관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발생하였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 지출액 |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2,744,896 | 2,744,896 | -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 계속비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

(단위 : 천원)

| 구분 | 계속비이월 | | 명시이월 | | 사고이월 | | 비고 |
|-------------------|-------|------------|-------|-----------|-------|---------|----|
|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
| 합계 | 21건 | 21,273,868 | 28건 | 4,670,346 | 1건 | 343,191 | |
| 다목적체육시설 건립공사 등 | 시설비 등 | 21,273,868 | - | - | - | - | |
| 함박공원 정비사업 등 | - | - | 시설비 등 | 4,670,346 | - | - | |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 - | - | - | - | 시설비 등 | 343,191 |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함박공원 정비사업 외 43건인 19,521,331천원으로 명시이월 26건 3,367,4691천원, 계속비이월 18건 16,153,839천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외 5건인 6,766,075천원으로 명시이월 2건 1,302,855천원, 사고이월 1건 343,191천원, 계속비이월 3건 5,120,029천원이다.

검사결과 총 26,287,406천원임이 확인되었다.

3. 재무제표

2016회계연도 연수구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 | 2016 | 전년대비 증감(-) | |
|-----------------|------------------|------------------|---------------|------------|
| | 금액 | 금액 | 금액 | 비율 |
| 유동자산 | 147,944 | 201,279 | 53,335 | 36.1 |
| 투자자산 | 3,432 | 3,373 | (59) | (1.7) |
| 일반유형자산 | 278,114 | 281,716 | 3,602 | 1.3 |
| 주민편의시설 | 249,624 | 256,781 | 7,157 | 2.9 |
| 사회기반시설 | 422,173 | 422,053 | (120) | 0 |
| 기타비유동자산 | 2,277 | 2,263 | (14) | (0.6) |
| 자산총계 | 1,103,565 | 1,167,464 | 63,899 | 5.8 |
| 유동부채 | 3,439 | 5,712 | 2,273 | 66.1 |
| 장기차입부채 | - | -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5,038 | 5,052 | 14 | 0.3 |
| 부채총계 | 8,477 | 10,764 | 2,287 | 27 |
| 고정순자산 | 951,961 | 962,607 | 10,646 | 1.1 |
| 특정순자산 | 16,235 | 17,392 | 1,157 | 7.1 |
| 일반순자산 | 126,892 | 176,701 | 49,809 | 39.3 |
| 순자산총계 | 1,095,088 | 1,156,700 | 61,612 | 5.6 |
| 부채및순자산총계 | 1,103,565 | 1,167,464 | 63,899 | 5.8 |

2016회계연도 말 연수구의 자산은 1,167,464백만원으로 전년도 1,103,565백만원보다 5.8%증가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말 부채는 10,76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증가하였다.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 | 2016 | 전년대비 증감(-) | |
|------------------------------------|----------|----------|------------|-------|
| | | | 금액 | 비율 |
| I.사업순원가(가-나) | 66,838 | 86,944 | 20,106 | 30.1 |
| 가. 사업총원가 | 240,315 | 275,956 | 35,641 | 14.8 |
| 나. 사업수익 | 173,477 | 189,012 | 15,535 | 9 |
| II.관리운영비 | 54,216 | 55,369 | 1,153 | 2.1 |
| III.비배분비용 | 7,615 | 7,469 | (146) | (1.9) |
| IV.비배분수익 | 7,531 | 24,909 | 17,378 | 230.8 |
| V.재정운영 순원가 (I + II + III - IV) | 121,137 | 124,873 | 3,736 | 3.1 |
| VI.일반수익 | 165,932 | 184,018 | 18,086 | 10.9 |
| VII.재정운영결과(V-VI) | (44,795) | (59,145) | (14,350) | 32 |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759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890억원을 차감한 869억원이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33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2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7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4억원, 기타수익 1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91억 원으로 전년도의 447억원보다 143억원(32%) 증가하였다.

4. 성과보고서

연수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수구는 본 회계연도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 개, %)

| 구분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 | |
|---------|-----------|--------|--------|------------------|-------|--------------|
| | | 개수 | 지표수(A) | 초과달성, 달성 수(B) | 미달성 수 | 달성률 (A/B) |
| 계 | 10 | 91 | 208 | 166 | 42 | 80 |
| 창조전략기획단 | 1 | 2 | 2 | 1 | 1 | 50 |
| 기획예산실 | 1 | 5 | 16 | 10 | 6 | 63 |
| 감사실 | 1 | 2 | 3 | 3 | 0 | 100 |
| 홍보미디어실 | 1 | 2 | 10 | 7 | 3 | 70 |
| 자치행정국 | 1 | 22 | 58 | 51 | 7 | 88 |
| 복지경제국 | 1 | 28 | 60 | 47 | 13 | 78 |
| 도시환경국 | 1 | 21 | 44 | 33 | 11 | 75 |
| 연수구의회 | 1 | 1 | 3 | 2 | 1 | 67 |
| 직속기관 | 1 | 3 | 7 | 7 | 0 | 100 |
| 사업소 | 1 | 1 | 5 | 5 | 0 | 100 |

연수구의 성과지표 달성편향을 살펴보면, 감사실 등 3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창조전략기획단은 50%, 기획예산실은 63%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 설정 및 측정방식을 단순한 양적지표로 하는 등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로 확인되었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1) 채권

(단위 : 천원)

| 구분 |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발생액 | 당해연도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현재액 |
|--------------------------|-----------|---------|-----------|-----------|
| 합계 | 3,811,595 | 120,054 | 198,074 | 3,733,574 |
| 일반회계 | 3,354,213 | 35,000 | - | 3,389,213 |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70,068 | 23,604 | 36,874 | 256,797 |
| 기금 (사회복지기금) | 187,314 | 61,450 | 161,200 | 87,564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33,574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해당없음

(3) 기금

< 기금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말 조성액(A) | 당해연도 조성액(B) | 당해연도 사용액(C) |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
|----------|----------------|----------------|----------------|---------------------------|
| 계 | 15,703,641 | 1,825,504 | 292,589 | 17,236,556 |
| 재난관리기금 | 3,901,084 | 996,770 | 1,608 | 4,896,246 |
| 문화예술진흥기금 | 2,179,146 | 71,037 | 43,200 | 2,206,983 |
| 사회복지기금 | 6,688,949 | 418,551 | 129,961 | 6,977,539 |
| 양성평등기금 | 1,736,051 | 69,012 | 20,510 | 1,784,553 |
| 식품진흥기금 | 1,133,862 | 189,144 | 97,310 | 1,225,696 |
| 옥외광고정비기금 | 64,549 | 80,990 | - | 145,539 |

검사결과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17,236,556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532,915천원이 증가한 것이다. 본년도에 기금의 사용액은 292,589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4) 공유재산

본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현재액 | |
|----------|-------------|-------------|------------|-------------|-------------|
| | | 증 | 감 | | |
| 합 계 | 587,819,157 | 18,332,815 | 75,000 | 606,076,973 | |
| 행정 재산 | 공용재산 | 180,213,853 | 16,126,440 | 20,000 | 196,320,293 |
| | 공공용재산 | 406,229,258 | 2,107,807 | 35,000 | 408,302,065 |
| | 소 계 | 586,443,111 | - | 55,000 | 604,622,359 |
| 일반재산 | 1,376,046 | 98,568 | 20,000 | 1,454,614 |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8,257,816천원이 증가한 606,076,973천원이다.

(5)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증감 현황 >

| 구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증 | 감 | |
| 수량 | 535 | 331 | 48 | 818 |
| 금액(천원) | 4,286,653 | 3,159,421 | 1,022,242 | 6,423,832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2,137,179천원이 증가한 6,423,832천원이 확인되었다.

(6) 성인지결산

< 성인지 결산현황 >

(단위: 개, 천원, %)

| 회 계 별 | | 사업 개수 | 세출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률 |
|---------------|------|----------|------------|------------|------|
| 총 계 | | 94 | 17,204,899 | 16,219,257 | 94 % |
| 여성정책 추진사업 | 소 계 | 5 | 964,381 | 962,054 | 99 % |
| | 일반회계 | 5 | 964,381 | 965,054 | 99 % |
| | 특별회계 | - | - | - | - |
| 성별영향 분석평가업 | 소 계 | 89 | 16,240,518 | 15,257,203 | 94 % |
| | 일반회계 | 89 | 16,240,518 | 15,257,203 | 94 % |
| | 특별회계 | - | - | -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 계 |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4개 사업의 17,204,9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94개 사업의 16,219,257천원이 집행되어 9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Ⅲ. 결산검사 결과 의견

■ 공통사항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현황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미수액은 2014년 12,692,279천원, 2015년 13,664,211천원, 2016년 14,177,688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2016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7.65%로 전년보다 양호하나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결손처분액은 635,181천원에 달함.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 년도 | 징수결정액 | 징수액 | 결손액 | 미수액 | 징수율 | 비고 |
|-------|------------|-----------|---------|------------|-------|----|
| 2014년 | 14,328,433 | 919,325 | 716,828 | 12,692,279 | 6.42% | |
| 2015년 | 14,760,032 | 852,284 | 243,536 | 13,664,211 | 5.77% | |
| 2016년 | 16,040,625 | 1,227,756 | 635,181 | 14,177,688 | 7.65% |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해 징수율을 좀 더 높여야하겠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유무를 철저히 조사·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무재산이나 행불 등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결손처분도 해야한다고 사료됨.

◎ 민간경상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

○ 현황

(단위 : 천원)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비고 |
|----------------|----------|----------|-----------|-----------|---------|----|
| | | 총계 | 1,515,565 | 1,363,354 | 152,211 | |
| 민간 경상 보조 | 일반 회계 | 복지정책과 | 124,460 | 124,460 | - | |
| | | 사회복지과 | 66,200 | 61,837 | 4,363 | |
| | | 여성아동과 | 648,699 | 643,140 | 5,559 | |
| | | 경제지원과 | 43,662 | 43,662 | - | |
| | | 일자리창출과 | 489,254 | 384,539 | 104,715 | |
| | | 환경보전과 | 2,400 | 2,064 | 336 | |
| | 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49,000 | 43,200 | 5,800 | |
| | | 사회복지기금 | 33,850 | 33,250 | 600 | |
| | | 식품진흥기금 | 8,040 | 6,692 | 1,348 | |
| | | 양성평등기금 | 50,000 | 20,510 | 29,490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등 지출증빙이 명확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정산내역에 불분명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비적격증빙인 간이영수증을 교부받는 사례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관리 부서에서는 지출증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애인과 및 가정정책과

◎ 과다한 불용액

○ 현 황

(단위 : 백만원)

| 부 서 과 목 | 불용액(구비) | 불용액(보조금) | 불용액(합계) |
|------------|---------|----------|---------|
| 여성아동과 | 288 | 599 | 887 |
| 결식아동급식지원 | 80 | 241 | 321 |
| 사회복지과 | 554 | 2,135 | 2,689 |

- 일반회계 총불용액 79,647백만원에서 예비비집행잔액 65,592백만원을 차감한 불용액 14,055백만원 대비 총 40개의 부서(주민센터포함) 중 두 부서의 불용액계가 3,576백만원으로 무려 25.4%에 해당함
- 두 부서의 사업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끄는 여성아동과의 사업인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살펴보면 (아래표 참조) 불용률은 25%이고 집행률은 75%임.

$$\text{불용률} = 321\text{백만원(불용액)} / 1,310\text{백만원(예산액)} = 25\%$$

인천시 내의 다른 구들과의 비교해 볼 때 인천시 구 전체의 평균불용률은 19%이고, 평균집행률은 81%로 연수구의 성과보다 나은 실정임

< 인천시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잔액 | 집행율(B/A) |
|-----|--------|--------|-------|----------|
| 중구 | 670 | 670 | - | 100 |
| 동구 | 880 | 632 | 248 | 72 |
| 남구 | 1,350 | 946 | 404 | 70 |
| 연수구 | 1,310 | 989 | 321 | 75 |
| 남동구 | 2,200 | 1,802 | 398 | 82 |
| 부평구 | 2,130 | 1,741 | 389 | 82 |
| 계양구 | 1,700 | 1,450 | 250 | 85 |
| 서구 | 1,500 | 1,218 | 282 | 81 |
| 강화군 | 530 | 489 | 41 | 92 |
| 옹진군 | 94 | 80 | 14 | 86 |
| 계 | 12,364 | 10,018 | 2,345 | 81 |

▶ 개선 및 권고사항

- 추후의 예산편성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거나,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거나 또는 예산전용을 했어야 했음
-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관심도가 높은 여성아동과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이 항목의 불용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한 끼의 급식지원 단가를 지적하고 있으나, 연수구가 인천시 전체 평균 불용율보다 높고 (전체 평균 집행율보다 낮고) 또한 불용율이 거의 없는(집행율이 100%인) 다른 구가 있는 것을 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복지정책과

◎ 성과지표 설정의 미흡

○ 현 황

(1) 정책사업목표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 상기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

$$\text{생계급여 예산집행률(\%)} = \text{예산집행액} / \text{예산액} * 100$$

(2) 정책사업목표 :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상기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률(%) = 예산집행액 / 예산액 * 100

②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률(%)

$$= \text{사례관리사업비 집행액} / \text{사례관리사업 예산액} * 100$$

③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률(%) = 예산집행액 / 예산액 * 100

| 정책사업목표 | (1) 저소득층 지원사업 | (2)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 | |
|--------|------------------|---------------------------|--------------------------|---------------------------|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집행률 (%) |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제공률 (%) | 푸드뱅크, 푸드마켓사업 집행률(%) |
| 목 표 | 99 | 100 | 100 | 100 |
| 실 적 | 99.9 | 85 | 100 | 98 |
| 달성률 | 101 | 85 | 100 | 98 |

▶ 개선 및 권고사항

- 상기 정책사업 목표들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생계급여 예산 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률,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률 및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률은 한결같이 양적성과의 측정에만 도움되는 투입지표임.
- 위의 양적인 성과지표들 외에 궁극적인 정책사업의 효과 및 정책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질적인 결과지표들을 설정해야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여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재무회계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미징구

○ 현 황

- 용역명 : 2016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대행 용역 계약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6.10.31.
- 계약방법 : 경쟁입찰 기초금액 : 80,710,000원 (VAT포함)
- 위 용역사업을 2016년 5월 10일 공개경쟁입찰시 15개 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1순위업체가 적격포기하여 2순위인 주식회사 태○○○○가 투찰금액 70,902,200원으로 낙찰받음(계약년월일 : 2016년 5월 25일, 착수년월일 : 2016년 6월1일, 준공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용역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지출 증빙서철에 청렴이행서약서가 부재함.

▶ 개선 및 권고사항

지출증빙서철에서 주식회사 태○○○○가 제출한 청렴이행계약서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이유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사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됨으로 청렴서약서 징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 안전총괄실

◎“방법용 CCTV 설치공사” 진행관련

○ 현 황

- 낙찰 1순위 업체인 (주)케이○○○○○○○○이 적격심사에 적격판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를 수행 완료함.

계약업체는 적격심사시 실적증명을 위해 (주)에코○○(대표▲▲▲)으로부터 실적증명서를 발부받아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 함.

- 또한 회사는 노무비 지급완료 증빙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당해 자료에 노무비 지급대상자로 실적증명서를 발부한 업체인 (주)에코○○의 대표 ▲▲▲가 포함된 것을 확인함.

○ 감사위원 의견

- 현행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업체 및 개인 그리고 적격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업체 및 개인과 이러한 협조를 통해 최종계약을 수행하는 업체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경쟁입찰에 참여한 특정업체에 대해 당해 업체가 적격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협조한 업체 및 개인은 해당 계약의 이행 및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강제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권고함.

◎ 재난위험시설 감소로 인한 새로운 재해예방 권고

○ 현 황

- 연수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관리대상 시설물 | 중점관리시설 | | | | 재난위험시설 | | |
|-----|-------------|--------|-----|-----|----|--------|----|----|
| | | 소계 | A급 | B급 | C급 | 소계 | D급 | E급 |
| 합 계 | 627 | 627 | 354 | 261 | 12 | 0 | 0 | 0 |
| 시설물 | 10 | 10 | 8 | 2 | 0 | 0 | 0 | 0 |
| 건축물 | 617 | 617 | 346 | 259 | 12 | 0 | 0 | 0 |

- 재난위험시설 해제사항

| 구 분 | 개 소 | 기 존 | 변 경 |
|---------|-----|-----|-----|
| 송학동지아파트 | 4개동 | D등급 | C등급 |
| 송도영남아파트 | 8개동 | D등급 | C등급 |

○ 검사위원 의견

- 재난위험시설 중 12개소가 중점관리시설로 변동되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이 소홀해질 수 있음.

-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대부분 육안점검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고, 개별 시설물 관리부서가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점검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된 12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중점관리시설물과는 차별적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준하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전 진단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건축안전진단업체, 가스 안전진단업체, 전기안전공사업체 등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과**

◎ “계속적인 수의계약 진행 용역” 계약 진행 관련

○ 현 황

- 원도심 및 송도지구의 '생활(일반)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경우 수년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 하고 있음.
- 또한 구는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 감사위원 의견

- 이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용역의 경우 경쟁을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유도 할 수 없으므로 발주처는 계약금액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정확성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원가산정 연구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또한 이러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함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은 본안을 위해 적절한 방법 이라 평가됨.

▶ 개선 및 권고사항

현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의 외부기관 의뢰는 단수의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계약금액 산정의 보다 높은 객관성 확보 및 최종 용역수행 업체로부터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의 평균값 또는 구청 상황에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인용하여 계약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시설관리공단 등의 검토

○ 현 황

- 원도심 및 송도지구의 면적 등에 대한 비교

| 구 분 | 면적(㎡) | 인구수 | 세대수 | 비고 |
|-------|------------|---------|---------|------------|
| 원 도 심 | 18,207,114 | 217,652 | 84,767 | |
| 송도지구 | 36,738,695 | 114,348 | 37,231 | 2017.03 현재 |
| 합 계 | 54,945,809 | 332,000 | 121,998 | |

- 2015년 및 2016년 연수구 발주 계약현황 및 공무원 현황

: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계약금액은 2015년 53,235천원에서 2016년 83,628천원 으로 약 57% 증가

|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 증감률 |
|----------|------------|------------|-------------|-----|
| 발주계약(건) | 1,355 | 1,657 | 증302 | 22% |
| 발주금액(천원) | 35,191,495 | 56,907,909 | 증21,716,414 | 61% |
| 공무원(명) | 673 | 690 | 증17 | 2% |

- 연수구는 2016년부터 송도지구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대부분의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 하고 있음.

반면 행정자치부의 총액 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의 추가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있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이관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기존 원도심의 사무보다 50%이상 큰 것으로 확인 됨.

-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의 경우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를 전문화하고자 시설관리공단 등 자체공단을 설립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업무의 직접 수행은 공무원의 증원대신 외부 민간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임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공무원을 증원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위원 의견

-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이관된 사업중 일부는 연수구 기존업무와 다른 새로운 사업인 경우가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기존의 사업대비 50% 이상 큰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더욱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와 같은 연수구청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이 계속 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수행 할 수 없을 것이며, 업무능률 저하 및 이로 인한 대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공무원의 담당업무 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기존 원도심 업무에 대한 품질 역시 저하 될 것으로 판단됨.
오랜기간 조직이 비능률 수동적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당해 조직에 이러한 비능률 수동적 업무처리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현행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기초단체의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초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참고하여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단설립 등의 대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연수청학도서관

◎ 도서 구매방법 개선

○ 현 황

- 최근 3개년 도서관 도서구입비

(단위 : 천원)

| 구 분 | 2014년도 | | 2015년도 | | 2016년도 | |
|-----|---------|-----------|---------|-----------|---------|-----------|
| | 도서구입비 | 예산현액 | 도서구입비 | 예산현액 | 도서구입비 | 예산현액 |
| 금 액 | 335,139 | 2,904,045 | 283,634 | 2,671,302 | 580,467 | 3,426,759 |
| 비 율 | 11.5% | | 10.6% | | 16.9% | |

※ 2016년도 해돋이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구입비 일시적 증가

- 2016년도 도서구입내역

| 구 분 | 합계 | 어린이자료 | 성인자료 | 국외자료 | 비도서/ DVD |
|--------|-------------|-------------|-------------|------------|-----------|
| 권 수(권) | 34,859 | 14,309 | 15,894 | 4,156 | 500 |
| 금 액(원) | 462,161,651 | 149,593,300 | 235,000,700 | 67,927,051 | 9,640,600 |

- 최근 3개년도 간 도서구입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에서 16.9%까지 변동이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2억4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했음.
- 도서관의 자료구성 및 선정은 자료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따르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객의 희망도서 신청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

○ 감사위원 의견

- 도서구입비 예산이 도서관 전체 운영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적으로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서관 자료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자료관리심의회의 구성원이 각 도서관 자료담당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 선정 시 다양성과 전문성이 배제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계획 수립 시 안정적인 장서의 구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도서선정 시 전문서적 등 깊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심의회에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 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희망도서신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획예산실

◎ 기금의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방안

○ 현 황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임.
- 현재 연수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6종이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하고 있는 금액은 총 17,236,556,576원임.

< 기금별 자금 운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금회계명 | 공금예금 | 정기예금 | 합 계 |
|----------|-------|-------|--------|
| 재난관리기금 | 96 | 4,800 | 4,896 |
| 문화예술진흥기금 | 2,207 | | 2,207 |
| 사회복지기금 | 4,278 | 2,700 | 6,978 |
| 양성평등기금 | 849 | 936 | 1,785 |
| 식품진흥기금 | 73 | 1,153 | 1,226 |
| 육외광고정비기금 | 146 | | 146 |
| 합 계 | 7,649 | 9,589 | 17,238 |

○ 감사위원 의견

- 최근 들어 저금리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 정기예금 금리는 2.03%이며 공금예금 금리는 2.01%로 전년 대비 기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음.
- 각 기금의 운용이 해당 부서별로 이뤄지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의 지출금액이 크지 않고 예치금으로 관리되는 경우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금고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각 기금을 해당 부서별로 개별적인 운용하기 보다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금별 지출계획에 따른 투자 상품의 만기를 관리하여 이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의 운용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